

2026년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 감사대상 : 논현종합사회복지관
- ◎ 감사기간 : 2026. 5.22 ~ 5.26(5일)
- ◎ 감사범위 : 2023년 5월 ~ 감사일(기관운영 사무 전반)
- ◎ 감사반원 : 특정감사담당 등 4명
- ◎ 지적사항 :

행정상(건)			재 정 상(건/원)			신분상 (건/명)
계	시정	주의 (권고)	환급	지급	환수세입	
7	3	4	-	-	-	-

2026년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남 동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운영규정 미공개
소관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조치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1. 업무 개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관 운영기준안내」,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규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관리·운영규정)에 사회복지관은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관리 등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해당 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운영규정을 2026.3월까지 총 25차례를 개정하였으나, 15차(2020.6.30.)와 16차(2021.3.23.) 개정 규정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정) 미공개한 복지관 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중복지급 확인 절차 누락

소관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조치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1. 업무 개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요건, 지급액 등 세부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본 지침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의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자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부양가족의 근무지에 중복지급 조

회 여부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회신 등의 확인 절차를 따로 수행하지 않아 가족수당 중복지급 여부 사실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휴직자 복무관리 미 실시

소관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조치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1. 업무개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별지1) 휴직자 복무관리 규정 제4조(휴직 중 복무 상황 보고) 제1항에 따르면 휴직자는 붙임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 말일(6월 30일, 12월 31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의 복무 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5조(휴직실태 점검)제1항에 따르면 휴직 실태 점검은 인사 부서의 장이 정기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고, 제2항 정기 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자 복무 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 여부
5.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 점검 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이는 경우 대상자에게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제4항 그에 대한 정기 보고는 연2회(1월, 7월)에 하고 필요시 수시 보고 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휴직자들에게 반기별로 제출받아 휴직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휴직자에 대한 휴직실태 점검도 누락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종사자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소홀

소관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조치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1. 업무개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종사자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나, 민감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없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 받았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종사자 휴가사용 부적정

소관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조치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1. 업무개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공가사용 부적절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복무규정 제31조(공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고 되어 있다.

- ①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집 될 때,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② 병역관계에 의한 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
- ③ 천재지변 등 기타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④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 관련 의무 보수 교육에 참가할 때
-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 ⑥ 삭제
- ⑦ 기타 근로기준법에 공가로 명시된 휴가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특별휴가 또는 교육(연수)로 사용하여야 하나 공가로 신청·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3. 탄력근무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노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복무규정 제24조(탄력근무 및 대체휴무, 보상휴가제) 제1항에 따르면 관장은 사업 및 직원 업무의 사정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명한 경우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상 근로일에 단축근로 또는 휴무케 할 수 있고, 제2항 휴일 또는 평일에 근무한 직원이 탄력근무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업무의 지장이 없도록 사전의 휴무 계획을 인사관리자에게 제출 후 상급자의 허가 후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휴일 대체는 ‘특정한 휴일’에 근로하고 그 보상으로 ‘특정한 평일’에 쉬는 것으로 1:1 맞교환으로 이루어 지나, 탄력 근무는 전체적인 평균 근로 시간을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업무량 변화에 따라 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휴일 대체와 구분되는 제도로써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휴일 근무를 대신하여 사전 승인에 따라 탄력 근무로 사용하고 있으나,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력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휴일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 근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복무규정 제24조의 탄력근무와 대체휴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개정·반영 및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및 용역 계약 시 감독 업무 소홀

소관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조치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1. 업무개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관리 용역” 및 “보안유지관리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

자 할 때도 위와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같이 공사 및 용역에 대해 계약 및 준공 관련 서류를 누락하거나 기성 대가지급 시 기성 보고를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감독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업무 소홀

소관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조치기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1. 업무개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검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수하므로 통상적으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함.)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검사와 정기 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 검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 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공사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부적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하자보수보증서(하자보증금 납부확인서)미징구된 계약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서(하자보증금 납부확인서)를 징구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하자검사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